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32713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. 8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이민호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2.04.07.압류		배당요구종기	2025. 5. 26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신새희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택임 차권자	2020.08.24.	289,000,000		2020.08.24.	2020.08.03.		
주택도시 보증공사 (임차인 신새희)	전부	권리신고	주택임 차권자	2020.08.24.~ 2022.11.22.	289,000,000		2020.08.24.	2020.08.03.	2025.5.13.	
최은성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4.09.02			
<비고> 신새희: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2. 9. 2.임 주택도시보증공사(임차인 신새희): 경매신청채권자이고 임차인 신새희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, 보증금 전액을 배 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함 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인서가 제출됨)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32713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1, 251
에코힐즈
[도로명주소]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23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6층
공동주택, 업무시설
1층 91.86㎡
2층 443㎡
3층 443㎡
4층 443㎡
5층 573.8㎡
6층 511.78㎡
지1층 48.22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6층 608호
철근콘크리트구조 57.06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1
대 1089.8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대지권의비율 : 1. 1,089.8분의 29.16

감정평가액		252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1.28	252,000,000	25,200,000
2회	2026.03.11	176,400,000	17,640,000
3회	2026.04.22	123,480,000	12,348,000
4회	2026.05.27	86,436,000	8,643,600